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구윤철 (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중동전쟁으로 물품을 선박으로 운송할 때 중전의 운송경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우회경로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이 상승하여 추가적 관세 부담이 발생하는바,

전쟁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물품 운송경로 등이 변경되어 운임이 통상적 운임보다 현저히 증가할 경우 관세 과세가격 산정시 통상적 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적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수입물품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4. 13. ~ 4. 2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이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(제4호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의 기준, 적용기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.

제20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“제3항에 따라 산출된 운임 및 보험료를”을 “제3항에 따라 산출된 운임 및 보험료 또는 제4항에 따른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”로, “제3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”을 “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4. 전쟁,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통상적인 운송경로·운송일정 등과 다르게 운송되는 물품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4월 3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3	3	3	3
---	---	---	---

현행	개정안
제20조(운임 등의 결정) ① ~ ③ (생략)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25조 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(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“선박회사등”이라 한다)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	제20조(운임 등의 결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(제4호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이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의 기준, 적용기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.
1. ~ 3. (생략) <신설>	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전쟁,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통상적인 운송경로 · 운송일정 등과 다르게 운송되는 물품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
⑥ 제3항에 따라 산출된 운임 및 보험료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	⑥ 제3항에 따라 산출된 운임 및 보험료 또는 제4항에 따른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-

법 제27조에 따른 가격신고를	-----
할 때 해당 물품이 제3항에 따	----- 제3항 또는
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	제4항에 따른 -----
품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를	-----
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	-----.
만, 과세가격 금액이 소액인 경	-----
우 등으로서 세관장이 자료 제	-----
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	-----
경우는 제외한다.	-----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411